

全美 의료통역사 협의회 조사보고서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全美 의료통역사 협의회

<http://www.ncihc.org>

2004. 07

감사의 말

의료통역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지식을 공유해주신 통역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아달루페 파체코(Guadalupe Pacheco) 미국 보건복지부 소수민족 건강사무국 프로그램 담당관의 재정지원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이해*" 조사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신 마리아 파즈 에버리(Maria Paz Avery)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빌어 NCIHC 표준, 훈련 및 자격심사 위원회의 캐린 러쉬케(Karin Ruschke, M.A) 공동의장, 쉬바 비다 쉴라프(Shiva Bidar-Sielaff, M.A) 공동의장(2003-2005), 린다 해프너(Linda Haffner) 공동의장(2001-2003) 및 현 위원회 회원, 마리아 파즈 에버리(Maria Paz Avery) 박사님, 브루스 다우닝(Bruce Downing) 박사님, 캐롤라 그린(Carola Green)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설문조사 답신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수잔 코처(Susan Kocher)와 최적의 데이터 분석법에 대해 통찰력 있는 고견을 주신 패트리샤 오만(Patricia Ohmans)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도움을 주신 에스더 디아즈(Esther Diaz)에게 감사드립니다.

NCIHC 이사회

윌마 엘버라도 리틀(Wilma Alvarado Little, MA) 이사회 공동의장

마리아 미칼직(Maria Michalczyk, RN, MA) 이사회 공동의장

엘레인 퀸(Elaine Quinn, RN, MBA, CST, DSA) 재무담당관

리사 모리스(Lisa Morris, MSTD) 비서관

신시아 E. 로트(Cynthia E. Roat, MPH) 자문 위원회 의장

캐린 러쉬케(Karin Ruschke, MA) 표준, 훈련, 및 자격심사 위원회

쉬바 비다 쉴라프(Shiva Bidar Sielaff, MA) 표준, 훈련 및 자격심사 위원회

엘리자베스 제이콥스(Elizabeth Jacobs, MD) 연구정책 위원회 공동의장

앨리스 첸(Alice Chen, MD) 연구정책 위원회 공동의장

조이 코넬(Joy Connell) 조직개발 위원회 공동의장

에스더 디아즈(Esther Diaz, M Ed) 조직개발 위원회 공동의장

줄리 번스(Julie Burns, M Ed) 회원복지 위원회 공동의장

수지 마토렐(Susy Martorell, MPH) 회원복지 위원회 공동의장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 통역사는 통역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기밀공개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통역사는 원문의 내용과 의도를 전달하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정확하게 통역한다.
- 통역사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담이나 충고를 하거나 개인적인 편견 또는 신념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 통역사는 전문가적 역할경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개입은 삼간다.
- 통역사는 통역임무를 수행할 때 접하는 자국 및 타국의 문화(의료 포함)를 알아가는 노력을 지속한다.
- 통역사는 모든 당사자를 정중하게 대한다.
- 환자의 건강, 웰빙, 또는 존엄성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역사의 옹호자 역할은 정당화된다. 옹호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 외에 좋은 치료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을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옹호는 상황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판단한 후에 침해 정도가 덜한 조치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된다.
- 통역사는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 통역사는 항상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로 임한다.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이해

“통역사는 ‘줄타기’를 할 때 균형을 유지해주는 ‘막대’ 역할을 하고 윤리강령은 이렇게 ‘막대’ 역할을 하는 통역사에게 훌륭한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강령은 균형과 안도감을 주고 특히, 통역사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윤리강령 설문조사 의명의 응답자

서론

미국에서 의료통역 전문직이 성숙하고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으로 적절하고 양질로 여겨지는 원칙과 관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 전미 의료통역사 협의회(이하 NCIHC)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통역사에게 갖는 기대를 통일하고, 의료통역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세 가지 단계를 규명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통역사의 실무에 지침을 제공하는 단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실무를 규정하는 실무기준의 제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고 통일성을 갖추고자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문 의료통역사의 자격을 표준화 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증과정을 만드는 것이었다(NCIHC, 2004).

NCIHC 표준, 훈련 및 자격심사 위원회(이하 STC)가 첫 번째 단계를 달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STC 위원회의 목표는 국가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의료통역 분야에 공통되는 주요 지침원칙을 제공함으로써 통역사가 일상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 도덕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TC 위원회는 기존의 윤리강령 검토, 윤리강령 초안 작성, 초안 검토를 위한 국가 표적집단 지휘, 국가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도출 등 체계적인 과정에 참여했다. 언어 종류나 통역사가 근무하는 특정 장소를 불문하고 기존업무를 바탕으로 모든 의료통역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STC 위원회는 의료분야와 법정통역 그리고 수화통역과 같은 관련 분야의 기존 윤리강령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 국가통역협회, 의료기관, 통역 서비스기관, 법정 프로그램 등 지역적 차원에서 이미 사용 중인 다수의 윤리강령을 표면화 했다. 다음으로 STC 위원회는 의료통역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열 가지 행동강령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비교해서 공통된 요소들을 찾았으며, 의료통역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STC 위원회는 기존 윤리강령과 공통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긴 하지만 관련성 있는 소수의 요소도 포함시켜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는 각각의 원칙에 이어 원칙에 대한 세부설명과 예시를 담은 간략한 해설도 실었다.

2002년 가을, STC 위원회는 전국의 현직 통역사들에게 초안을 공개하고 검토와 논평을 요청했다. 미국 전역의 9개 지역에서 표적집단을 구성했다. 통역서비스 전달방식(예: 대면 및 전화 통역)과 각 언어권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표적집단을 구성하는데 이목이 집중되었다. 표적집단은 통일된 국가윤리강령의 필요성과 의료통역을 위한 윤리강령 개발이 긍정적인 조치임을 확인했다. 일부 원칙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표적집단의 피드백을 거치면서 윤리강령 초안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고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표적집단의 피드백을 토대로 해설이 포함된 두 번째 윤리강령 초안을 개발했으며 수정권고 사항들을 꾸준히 통합해 나갔다. 이후에 NCJHC 웹사이트와 각 주 의료통역사 연합회에서 배포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현직 의료통역사들에게 두 번째 초안을 소개했다. 약 2500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0%였다. STC 위원회는 500건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위원회는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안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에 강력한 동의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해설이 논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행에 대한 설명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STC 위원회는 윤리강령 최종 초안을 제정할 때, 해설을 제외하고 윤리강령을 일련의 원칙으로 발간하여 원칙 자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로 했다. STC 위원회는 원칙에 대한 세부설명을 제기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침서와, 실무문제를 다루는 실무기준 개발부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STC 위원회는 모든 피드백을 고려해서 윤리강령 최종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승인이 있기 전에 최종 초안을 엄선된 의료진과 의료윤리학자들에게도 전달해서 논평을 듣고자 했다.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은 체계적인 심사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다. STC 위원회는 이 윤리강령이 직업윤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현직 통역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대표할 것이라 믿는다. 현직 통역사들은 이 원칙이 딜레마에 빠지거나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통역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데 동의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통역사라고 해서 모두가 윤리 개념, 대표 윤리강령, 직업 실무과정에서의 윤리강령의 의미, 그리고 윤리강령과 실무기준의 차이점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윤리강령을 일반적인 윤리행동의 맥락에서 살펴본 다음 의료통역사가 자주 직면하는 특정 문제와 딜레마의 맥락에서 각각의 원칙을 논의한다.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원칙에 대한 상세설명과 논의, 및 원칙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통역사들이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윤리와 일반 윤리행동, 그리고 의료통역이라는 직업적인 맥락에서의 윤리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두 번째 부분은 윤리강령이 근거로 삼는 핵심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는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칙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다.

(Simon Blackburn, 2001)

인간은 의식을 가진 태초부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적절하거나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기대해왔으며 행동규율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블랙번(Blackburn, 2001)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항상 "특별히 바르게 행동한다"기 보다는 주변의 사회집단을 지배하는 옳고 그른 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된 지배 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왔다. 예를 들어, 문화는 규범과 관습으로, 종교는 도덕성으로, 정부는 법으로, 그리고 전문직업은 윤리강령으로 구현된다.

윤리는 그리스어 *ethos* 에서 유래되었으며 "도덕적 관습"을 의미한다. 즉, 윤리란 "옳거나 바른 행동원칙"이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결국 윤리적인 행동이란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이상화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전문직이 발전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임무와 의무를 법으로 제정하여 수용가능하고 적절한 행동규범과 공동의 기대를 담은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블랙번(Blackburn, 2001)의 말을 인용해보면, 윤리적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주변 환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고 한다. 윤리적 환경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존경 받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쁜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무엇을 주고 받아야 할 지를 결정한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자부심, 수치심, 분노, 또는 감사를 느끼는 원인이나 용서 할 수 있는 일과 용서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한다. 즉, 윤리적 환경은 인간에게 행동기준을 제시한다 (p. 1).

전문직의 윤리적 환경은 직업 윤리강령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전문직에 대한 법률을 제정 할 때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원칙이나 가치"를 제시한다. "윤리강령은 특정관계나 주어진 맥락에서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NCIHC, 2002). 윤리강령은 우리가 난감한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선택에 일관성을 더해주고 독단성은 줄여준다(Gonzales, et al., 1991).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은 미국 의료통역사의 실무에 필요한 윤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신생 전문직은 윤리강령에 적절한 행동원칙을 형성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 개인적인 의견과 선호에서 비롯되는 혼란에서 벗어나 서로가 선호하는 "요구"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요구"가 규율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직업적 사명감과 목적을 존속시키는 '규범'을 형성한다.

그러나 윤리강령 원칙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윤리강령이 완벽하든, 또는 간결하든지 간에 통역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딜레마나 선택에 대해서 항상 확답을 줄 수는 없다. 통역사가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실제로 직면했을 때 윤리강령이 "해결서"나 해답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특정 환경에서 개인의 가치가 서로 상충하듯이 윤리강령도 갈등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가치의 중요성을 두고 얼마나 자주 저울질해보는가?

윤리강령이 명백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데도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윤리강령의 목적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윤리강령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올바른 행동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윤리강령은 특정 상황에서 했던 선택을 평가한 후에 행동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담고 있는 원칙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독단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규율을 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용인 할 수 있는 보편적이거나 "문화를 초월한" 규율이 존재하는가? 의료

통역 분야에서 문화를 초월한 윤리원칙을 만드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의료통역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제도를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다. 많은 통역사들이 소속된 기관에는 자체적으로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직업군도 함께 있다. 이들 모두가 독특한 삶의 경험과 환경에서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직업에 대입시킨다. 게다가 의료통역사가 의료통역에서 만나는 의료진과 환자들도 각기 다른 윤리제도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일 윤리강령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윤리제도를 아우를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는가? 특정 시점이나 장소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문화를 초월한" 일련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료통역사와 동료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STC 위원회는 "문화를 초월한" 원칙을 수립했다. STC 위원회는 자체 논의와 표적집단 및 설문조사 정보의 검토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과 주관적 견해는 배제하고 의료통역사의 역할에 중점을 둔 원칙을 만들고자 했다. 주요 임무에 있어서 사명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료통역사라면 누구나 이 원칙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한다. 즉, 의료통역사의 임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웰빙이라는 의료통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 때문에 의료통역사는 특별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다른 직종의 임무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최소한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의료통역을 할 때는 통역사만이 유일하게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통역사는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의료통역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의료통역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통역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가치, 또는 의견을 통역내용에 개입시키지 않고 서로의 대화를 충실하게 전달할 것으로 믿어야 된다"(MMIA 및 EDC, 1996). 또한 기밀보장의 의무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 간의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믿어야 된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통역사가 그러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Edwards, 1988, p.22)." 의료통역사가 직업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이익과 의료통역의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줄 때, 환자와 의료진은 안심할 수 있다.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핵심가치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은 선행, 충실성,¹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 존중이라는 세가지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핵심가치가 의료통역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만들어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에서 통역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선행

의료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과 웰빙이다. 다른 의료직종과도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다. 이는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환자의 가족 부양체계(예: 가족 및 지역사회)를 지지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와 임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충실성

통역사 역할의 본질에는 충실성이 내제되어있다.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사전(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충실성의 의미를 “자신의 임무와 의무를 변함없이 수행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는 것. 비 인칭에서는 본래의 ...을(를) 신뢰할 만한”이라고 정의한다. 이 표현이 통역사 업무의 질과 통역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통역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원천어를 목표어로 전환할 때 원래의 메시지를 추가, 생략 또는 왜곡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 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다.

3. 문화와 문화차이의 중요성에 대한 존중

문화는 우리가 세상과 문화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의료분야에서 문화는 증상, 증상에 따른 진단, 관련 질병 또는 질환의 경과에 대한 예상, 치료법이나 약의 효능과 만족도, 예후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준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피어(Sapir, 1956)와 워프(Whorf, 1978)와 같은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통해 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통역사는 메시지를 원천어에서 목표어로 변환하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문화와 문화차이의 영향을 존중해야 될 이중임무가 있다.

¹ 의료통역 업무와 관련해서 선행과 충실성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신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마조리 클레이(Marjorie Clay) 윤리학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통역사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문화에 기초한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들은 말의 의미를 맥락에 따라 파악해야 할 의무도 있다”(MMIA 및 EDC, 1996). 발언자의 문화 준거 틀이 의미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할 경우, 통역사는 발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표면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게 된다. 둘째, 통역사는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치명적인 오해와 잘못된 의사전달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가치는 다른 의료진과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 현재 의료전문직 종사자를 위해서 의료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문화적 역량을 주요 기술로 포함시키는 계획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화차이를 해결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진 모두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때 까지는 문화가 의료통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알리는 일은 통역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원칙 해설

이 부분은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각각의 원칙에 대한 해설이다. 해설에서는 원칙의 목적과 일상업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주요 딜레마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해설이 모든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서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통역사는 진료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기밀보장의 주된 목적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는 의료통역의 특성을 존중하는데 있다. 통역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이는 다른 의료진과도 공유해야 할 윤리원칙이다.

건강과 질병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환자는 이런 문제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여부는 환자의 재량에 맡긴다. 의료진이 환자로 하여금 웰빙을 지원하거나 회복시킬 목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환자의 정보를 진료와 상관없는 당사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체계(통역사 포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료팀”으로 구성될 지 확실치 않고, 환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다른 의료진과 대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통역사와 마찬가지로 통역사가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가끔씩 있다. 이 원칙의 맥락에서 “진료팀”이란 특정 환자를 보살피고 치료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특정 의료기관 내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의료진에게 후속 진료를 받을 때 그들은 모두 진료팀의 일부로 간주되어 환자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환자가 다른 진료기관으로 옮기면 새로운 진료팀을 만나게 된다. 법적 근거와 법적 책임을 이유로 새로운 진료팀은 이전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자정보를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환자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온 통역사는 같은 이유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환자로 부터 분명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동일한 필요성에 의해 구속된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기밀보장 사안을 누구에게 공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선행이라는 핵심가치에 바탕을 둔다. 즉, 통역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지금 진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이 모를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라면 통역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이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만 통역사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료진이 환자를 해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의 경계는 애매모호하다. 통역사는 이 문제를 잘 다루어 환자의 웰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통역직원이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기밀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좀 더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자유의 정도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족과의 정보 공유

여러 문화권에서 가족을 개인의 연장선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기밀보장은 종종 중요치 않은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화규범이 그렇다고 해서 환자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은 통역사(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료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문화규범에 대한 지식이 특정 사람이나 가족체계에 대한 지식으로 직접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인 또는 가족체계가 특정 규범을 따르는지의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정보공개 여부와 정보공유 대상자는 항상 환자의 특권으로 결정되며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환자의 정보가 공유 될 경우에는 환자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체계 내에서 정보공유와 관련된 기대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 명확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진과 환자 시스템 간에 의사소통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통역사가 알아차렸을 경우, 그들은 역할 한도 내에서 행동하면서 환자 및/또는 의사에게 이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환자에게 달려있고 환자는 통역사가 아닌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 가족이 정보를 환자에게 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개인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신념을 이유로 이렇게 하길 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누구와, 언제,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반드시 환자와 협의해야 된다. 환자가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지 않는 한 통역사나 심지어는 의료진조차도 환자정보에 대한 공유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는 없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규범은 개인의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환자가 분명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지 않는 한 "알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고 본다.

기밀보장 및 선행의 가치

통역사는 기밀보장 원칙의 중대성과 중요성을 다른 가치와 원칙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저울질 해보아야 할 때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상황은 선행의 가치 즉, 환자 및/또는 다른 사람들의 웰빙 문제가 개입될 때 발생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때는 기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통역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한 가지는 통역사가 이전의 의료통역수행으로 환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통역사는 환자가 특정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담당 의료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려고 한다. 통역사가 이런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기밀보장의 원칙을 어기는 것인가?

또 다른 상황은 환자가 통역사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의료진에게 통역사가 기밀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암시적으로나 명백하게 할 때 발생한다. 많은 통역사들이 의료진과 대면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환자와 함께 앉아 있는 동안 환자의 건강이나 웰빙과 관련된 중대한 결과 또는 암시를 지닌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때로는 이 정보가 지나가는 말로 공유되어서 환자가 그들이 말한 내용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환자가 통역사에게 이 정보는 기밀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기밀이 의료진이 함께 있는 진료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유된 정보의 유형에 관한 예로는 학대, 치료요법에 대해 제대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것, 환자나 환자의 주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통역사는 투명성을 유지할 윤리의무가 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통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환자가 하는 모든 말을 통역하는 것이 통역사의 역할임을 환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환자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통역사가 말해서는 안 된다. 둘째, 통역사는 기밀보장의 의무가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진료팀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즉, 환자가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통역사에게 말했을 때 그 정보가 환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면 통역사는 해당 의료진에게 그 정보를 알릴 윤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통역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의 학대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협에 관한 정보는 기밀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례를 구성한다. 많은 주에서 사람이 학대당해서 위태로운 상태이거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면 의료진처럼 지정된 사람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학대나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통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한 국가차원의 법적 요구사항은 없지만 각 주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두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역사들은 주 내의 의무보고자가 누군지 파악해야 된다. 통역사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정보공개의 동일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 밖에도 통역사가 학대나 잠재적인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윤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는 사람에게 학대의 징후 또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지표가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문화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화적 관습이 오해를 받고 있음을 모르는 환자의 웰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보공개가 필요할 때 통역사의 책임

정보공개 결정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가진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와, 왜 공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온갖 노력을 동원해서 스스로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설득한 후에야 비로소 통역사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가 정보공

개를 거부하여 통역사가 그것을 공개하기로 윤리적인 선택을 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된다.

통역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모를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감독관, 통역 서비스실, 기관 책임자 또는 의료기관 내 윤리부서와 상의해야 한다. 그럴 시간이 없으면 통역사가 환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후에 감독 회의나 전문 세미나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는 기밀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는 익명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없애고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2. 통역사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원래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윤리원칙의 목적은 통역이 있는 대면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화 준거 틀을 공유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가능한 한 많이 가늠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역사의 윤리적 책임은 원천어로 발화된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메시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중요하거나 받아들일 부분은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목표어로 통역하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직접 의사소통을 할 때 전달된 메시지와 의미를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밖에 없다. 따라서 통역사는 각 당사자들이 하는 모든 말의 메시지를 생략, 추가 또는 왜곡하지 말고 완전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통역사는 메시지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해주는 제스처, 몸짓 언어, 목소리 어조를 가능한 한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충실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역사가 자신을 메시지 내용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그래픽으로 되어 있거나, 감정이 잔뜩 실려있을 때, 또는 통역사의 불편한 감정과 심지어 고통까지도 끌어내는 속성이 있을 때 특히 더 어렵다. 그러나 메시지가 통역사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메시지의 언어나 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통역사가 윤리원칙에 따라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이유와 진료를 받기 전까지 이어진 사건들(발생한 일들 및 증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과 바람을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의료진이

정확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과정에 도달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정보원이다 (Woloshin, et. al., 1995). 통역사는 원천어로 전달된 데이터를 의료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서 그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진은 통역사가 전달한 내용을 진단도구로 활용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통역사는 모든 정보가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사용하는 언어는 환자들에게 정보원이 된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가능한 치료법과 처치 등을 제안한다. 의료진은 언어를 통해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치료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이용해야 한다. 통역사가 의료진이 표현하는 모든 메시지를 충실하게 통역해야지 환자가 정보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두 경우에 모두에 있어서, 통역사는 원래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를 최대한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대화의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지지할 의무도 지닌다.

문화맥락을 고려한 메시지 전달의 충실성

지금까지 우리는 원래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를 목표어로 전달할 때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문화맥락의 고려”라는 수식어가 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는 통역의 “충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언어학자들 가운데 특히 사피어(Sapir, 1956)와 워프(Whorf, 1978)는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인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언어는 문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문화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한다. 문화적 경험은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통역사는 사용되는 단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문화적 요소를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된다.

통역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른 문화의 언어로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과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 즉, “통역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할 때다(Seleskovitch, 1978). 이런 경우에 통역사는 등가를 이루는 단어나 표현을 찾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전개와 상호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이 속한 문화의 경험이나 개념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역사는 모든 대화에 포함된 문화적 뉘앙스를 파악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통역사는 문화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만약 그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곤란해지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의사소통에 문화적 장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메시지 이면의 숨은 의도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무가 있다.

변환된 메시지와 모욕적인 내용의 충실한 전달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해서 통역사들은 양쪽 당사자가 무차별적으로 편견을 가진 말이나 비판적인 말을 할 때 이를 곧바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 통역사는 그런 발언이 개인적인 모욕감을 줄 것이라 판단해서 통역사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닌데도 전달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통역사가 메시지를 생략하는 것 즉, "내용을 고쳐서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역사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모든 대화가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환자가 사용하는 공격적인 언어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통역사가 이런 말을 생략해 버리면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잃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심코 한 모욕적인 발언이 본의 아니게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역사가 직접 나서서 발언자에게 그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통역사는 발언자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발언자가 원하면 말을 다시 구성해서 바꿔 말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

메시지 전달의 충실성과 통역사의 실수

의료통역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일한다. 이런 이유로 자격을 갖춘 유능한 통역사라 하더라도 통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역사는 어떤 윤리적 의무를 지는가?

무엇보다 통역사는 자신의 통역수행 내용을 모니터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역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료통역 대면에서 양쪽 언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자신의 통역 수행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는지 알아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

정하고 고치는 것은 원래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웰빙을 특히 고려한다는 점에서 통역사의 윤리적 의무에 해당한다.

3. 통역사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담이나 충고를 하거나 개인적인 편견 또는 신념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윤리원칙의 목적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의료통역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역사가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전에서는 “중립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공정한, 공평한, 선입견을 배제한, 편견 없는, 객관적인* 등이 나와있다. 따라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판단을 내릴 때 호의나 편견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며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호의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다. 중립성은 의료통역 대면에서 당사자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에 주로 적용된다. 즉, 통역사가 어떤 내용을 통역할지 또는 어떻게 통역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통역할 때 당사자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통역 할 때 각 당사자의 자율성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통역사가 존중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통역사가 어느 한쪽 편에 서거나 상대방을 설득시켜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의료통역을 할 때 통역사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호관계에서 주요 참여자가 아니므로 다른 참여자를 위해 결정이나 충고, 상담을 하거나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즉, 통역사가 발언자 중 한명인 것처럼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충고, 상담을 하거나, 환자와 의료진에게 개인적인 편견과 신념을 개입시키고 강요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 통역사가 나서서 말 할 때는 자신의 역할이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대화를 진행시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통역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쪽이든 충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은 통역사의 의무가 아니다.

이 원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역사가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환자를 돌보지 말아야 된다고 오해한다. 이와는 반대로 앞서 논의했듯이 환자의 웰빙과 안녕은 의료통역사 윤리강령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다른 의료진과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통역사는 통역 대면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인간성과 인간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적인 배려만으로 위로와 안도감이 필요한 환자와 공감할 수 있다.

4. 통역사는 전문가적 역할 경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개입을 삼간다.

이 원칙의 목적은 1)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공, 2) 잠재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이다.

투명성

전문가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통역사가 통역 역할을 수행할 때 의료통역 임무만을 수행하고 역할 범주를 벗어나는 임무는 어떤 것이라도 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통역사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통역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역사는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역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통역사가 간호직이나 다른 의료전문 분야에서도 훈련을 받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중역할을 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특정시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매우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환자의 웰빙을 위해 통역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거나 다른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 할 때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한다.

통역사가 전문가적 경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의료통역사로서 자신의 능력한계와 업무경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투명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예: 정신건강 면담)의 통역을 의뢰 받은 통역사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데다 다른 통역사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통역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그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이 윤리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통역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통역 수준에 대해서 알린 후에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개인적인 개입과 이해상충

이 원칙 또한 통역사가 통역을 맡은 사람들의 일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환자가 의료진이 구사하는 말을 할 수 없거나 의료체계를 협상 할 수 없을 때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통역사는 이러한 환자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관계는 통역사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다른 종류의 기대와 요구를 수반한다. 개인적인 개입을 피하면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갈등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역을 하기 전에 불친절하게 굴고 배려를 하지 않거나 통역사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통역을 시작하기에 전에 환자와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통역사의 전문가적 역할

의 일부로써 반드시 개인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관계의 형성이란 통역이 있는 대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통역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며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역사와 환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치료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자가 통역사를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편안함을 의사도 느낄 수 있다.

통역사와 환자가 소규모로 긴밀하게 결합된, 같은 언어 문화 공동체 출신일 때, 개인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전문가적 경계에 관한 질문이 통역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통역사가 의료체계 이외의 범주에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통역사는 의료통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통역 이외의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관계가 통역사의 윤리적인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통역사가 환자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의료통역을 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가족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기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통역사가 자신이 통역을 맡은 사람과 같은 지역사회 출신일 경우, 통역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와 통역 이외의 상황에서 얻은 정보 간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통역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윤리의무가 있다.

5. 통역사는 통역임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자국과 타국의 문화(의료 포함)를 배워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원칙의 목적은 의료통역에서 문화가 중요한 요소이고, 의미생성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역사는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화기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경험 즉,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통역사가 문화에 기초한 이해와 편견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개인적인 관점이나 편견을 개입시키는 것을 삼가 할 수 있다. 이 윤리원칙은 통역사가 또 다른 윤리원칙인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실제로 도움을 준다.

둘째, 이 원칙은 통역사가 통역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것은 통역사가 환자나 의료진의 문화, 또는 의료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통역사나 의료진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특정 문화신념과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화

는 개인의 성격, 가족의 가치관과 신념, 계급, 성별, 교육, 및 기타 개인성향, 그리고 다른 문화에의 동화 정도 등 독특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문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통역사는 문화차이를 넘어서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와 문화관습 및 문화신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화적 가정 및/또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잠재적 오해나 잘못된 의사소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피해야 할 윤리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신념이나 문화관행이 충돌하거나 증가어가 부족 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화 차이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통역사가(통역사의 개입에 대해 모든 당사자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 문화정보를 공유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의료통역을 할 때 통역사가 주요 문화제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의 두 가지를 기술을 얻을 수 있다. 1) 발연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 문화요소가 양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해보고 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배경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정책과 구성요소를 실행하고 문화적인 역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부 의료통역사들은 왜 그들이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은 통역사를 비롯해서 진료팀을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자 윤리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료팀 내에서 의사소통의 처리와 의미 생성에 방해가 되는 문화요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통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래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의 원칙과 환자의 웰빙 이라는 의료통역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통역사는 의료통역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나가고 이런 지식을 실무에 적용 할 의무가 있다.

6. 통역사는 모든 당사자를 정중하게 대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통역을 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고 통역사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임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역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통역을 할 때 당사자들이 가진 자율성과 전문지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환자는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확보한 후에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정보를 결정 할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지식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환자가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역사는 모든 메시지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전달 할 의무가 있다. 통역사가 통역이 있는 대면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똑같이 예의를 갖추면 상호존중을 도모할 수 있다.

7. 환자의 건강, 웰빙, 또는 존엄성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역사의 옹호자 역할은 정당화된다. 옹호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 외에 좋은 치료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을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옹호는 상황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판단한 후에 침해 정도가 덜한 조치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된다.

통역사는 의료통역 대면에서 목격했거나 경험한 일(좋은 나쁜, 또는 올바르게나 잘못된 일)의 "증인"²이 될 수 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통역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목격할 때가 있으며, 이런 행동은 통역 대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의료기관 내부의 다른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통역사는 옹호자의 역할 즉, "변호"를 하거나 "잘못된 바를 교정" 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료통역과 관련된 옹호 개념은 논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STC 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첫 번째 초안에 옹호에 대해 다른 원칙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표적집단의 피드백을 통해서 현직 통역사들이 옹호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많은 통역사들이 옹호 역할을 부당하게 수행하도록 요청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반면, 옹호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특정 행동을 취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통역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논란이 된 부분은 옹호의 의미에 대한 혼란과, 옹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옹호가 중립성의 윤리원칙 즉, 판단을 하거나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의료통역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편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금지 행위는 옹호 사례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다. 옹호

² 통역사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 시키고자 의료통역 초창기에 "증인"의 개념을 도입해주신 마르가리타 매틀(Margarita Battle)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통역 서비스 전직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란 뭔가가 잘못되었고 그 일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지 분명하게 맞/또는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옹호는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윤리적인 행동의 핵심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의료분야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웰빙(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을 지키고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마다 통역사를 다르게 본다. 한편에서는 통역사를 거슬리는 존재로 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통역사를 "잊혀지거나"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 상호작용 과정에서 당사자가 통역사에게 존중이나 윤리실천의 도를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통역사가 목격했거나 경험한 일이 환자 또는 의료제도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역사는 다른 직업 군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듯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개인이나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고 옹호 할 윤리의무가 있다. 통역사에게는 "증언"을 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으므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옹호 입장을 취하는 것을 가볍게 보서는 안 된다. 통역사는 상황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판단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 된다. 옹호 여부를 결정할 때 통역사는 동종 업계에 있는 감독관과 동료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관련 당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통역사가 윤리학자와의 상담을 원할 수 있다. 통역사가 옹호 입장을 취할 때는 항상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적절한 장치와 프로토콜을 파악하고 따르도록 한다. 통역사는 항상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8. 통역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통역사가 통역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도록 하는데 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역하는 능력은 통역사가 의사소통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 배경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Seleskovitch, 1978). 의료통역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식 영역으로는 의학적인 맥락(예: 기본적인 신체부위와 기능, 흔한 질병 증후군 및 각각의 치료법)과 통역을 맡은 환자집단의 사회 문화적 맥락(예: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신념, 토속 질병 및 민간요법, 동화와 문화 적응의 정도가 환자가 질병을 표현하는데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이는 통역사가 각 분야의 의료진이나 인류학자들의 전문지식까지 깊이

있고 폭넓게 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통역사가 배경지식을 많이 알수록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원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통역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통역사는 언어 능력과 통역 기술을 꾸준히 개선하고 향상시킬 책임도 있다.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 통역사는 구문의 적절한 사용, 자연스러운 표현, 이해력, 발음의 정확성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통역사가 잘 알지 못하는 각 언어가 새롭게 발전하고 다양해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통역사가 해야 할 임무 중 일부이다. 통역 기술에 있어서 통역사는 메시지를 양쪽 방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역에 필요한 기타 기술로는 통역을 하거나 기억 보조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복잡한 의미덩어리를 보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문직은 역동적인 시스템이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간다.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다른 방법이 발견되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진다.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용주가 아닌 통역사 개인이 해야 할 의무다. 전문기관 소속, 현대문헌 연구, 사내교육 및 감독의 적절한 활용, 워크숍과 컨퍼런스 참가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통역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9. 통역사는 항상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통역사가 자신의 업무에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적 가치와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통역사가 자신의 임무를 유능하게 수행하고 업무수행과 행동을 모니터 해서 업무거절을 해야 될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야 될 때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동시에 통역사로서 존중 받고 싶은 데로 다른 직종 종사자를 존중하며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종, 계층, 성별, 또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 등 개인특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행동이란 통역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역사는 당사자로부터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통역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통역사는 통역사에게 의지를 해야만 웰빙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전문성과 환자로부터 받는 선물³

환자로부터 받는 선물에 관한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환자는 통역서비스에 대한 감사표시로 통역사에게 선물을 건넨다. 이러한 행동 역시 문화적 전통을 종종 반영한다. 선물을 받는 것이 윤리를 어기는 것인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통역사 입장에서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참고 해볼 만한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 통역사는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정책을 파악하고 따라야 한다. 의료기관의 정책 대부분이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문화 가치와 전통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정책에서는 선물을 수락하지 않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보고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 받아도 되는 선물과 받아서는 안 되는 선물의 종류를 지침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둘째, 통역사는 환자가 선물을 주는 의도가 통역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혜나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물 가격으로 선물을 주는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다. 선물 가격이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는 보통의 수준을 벗어날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

통역사가 개인적인 선물을 받든, 정중히 거절하든, 또는 통역실을 대표해서 선물을 받기로 결정 했든지 간에 사례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할 임무가 있음을 환자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보고서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윤리강령이 지침서는 맞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서"는 아니다. 윤리강령 해설부분을 통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윤리원칙들이 서로 상충할 수 도 있다는 점도 살펴봤다. 윤리적 행동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윤리강령의 역할은 간단히 말해서 실무가가 행동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고 따져봐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윤리원칙은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

³ 이 부분은 미국 의사 협회 윤리강령 원칙 E-10.017 '환자로부터 받는 선물'을 참조해서 작성함.

한 추상적 원칙으로는 다양한 인종과 독특한 환경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취하는 행동방침 각각의 결과를 평가해서 최종선택을 해야 된다. 윤리강령은 의료통역사들이 행동방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이상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들이 직업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NCIHC와 STC 위원회는 미국 의료통역사 윤리강령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시하여 의료통역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동시에 NCIHC와 STC 위원회는 미국 윤리강령을 의료통역 분야가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는 살아있는 문서로 인정한다.

참고문헌

Blackburn, Simon. *Being G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alifornia Healthcare Interpreters Association Standards & Certification Committee. *California Standards for Healthcare Interpreters: Ethical Principles, Protocols and Guidance on Roles & Intervention*. 2002.

Edwards, A.B. "Ethical Conduct for the Court Interpreter." *The Court Manager*, 3, No.2(1988): 22-25.

Gonzalez, Roseann D., Victoria F. Vasquez, and Holly Mikkelson.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ing: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Massachusetts Medical Interpreters Association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Medical Interpreting Standards of Practice*. Newton,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1996.

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 *A Code of Ethics for Health Care Interpreters: A working paper for discussion*. www.ncihc.org, 2004.

Sapir, Edward. *Culture, Language, and Personalit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6.

Seleskovitch, Danica.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Translated by Stephanie Dailey and E. Norman McMillan. Washington, D.C.: Pen and Booth, 1978.

Whorf, Benjamin Lee. "The Retention of Habitual Thought and Behavior to Language." In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Edited by John B. Carroll. Cambridge, Mass: M.I.T. Press, 1978.

Woloshin, Steven, Nina A. Bickell, Lisa M. Schwartz, Francesca Gany, and Gilbert Welch. "Language Barriers in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JAMA*. 273, No.9, (1995): 724